

## 수정 소장 - 행정 명령

### Petition for Modification - Administrative Order

제목: ) 소송 사건 번호:  
       ) 비양육권 부모 )  
       ) )  
       ) )  
       ) 양육권 부모 )

#### 작성 요령

서명 외에는 모두 정자체로 기입합니다. 파란색이나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WAC 388-14A-3925에 따른 요구사항:

1. 제안된 (새로운) 아동 양육비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2. 수정 요청 사유를 기입하십시오.
3.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이 양식의 2페이지에 나열된 서류들을 작성한 후 DCS로 반송하셔야 합니다.

참고: 이 양식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법 판사(ALJ)가 이 소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본인은 \_\_\_\_\_, 아동지원국(DCS)와 위에 이름이 언급된 당사자들에게 본인의 아동 양육비 행정 명령을 수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법원에 출석하여 설명하라는 지시를 내려줄 것을 행정 심의회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게 요청합니다. 본인의 아동 양육비 행정 명령은 \_\_\_\_에 입력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소송건에 대한 현재의 아동 양육비 금액이 월 \$ \_\_\_\_\_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현재의 양육비 금액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추가 요구사항과 귀하의 서명 섹션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감사의 말

본인은 다음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1. DCS는 RCW 제74.20A.059항에 포함된 명령 수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소장에 반대할 것입니다.
2. 현재 본인의 명령서에 이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나 노조를 통해 현재 가입할 수 있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될 건강보험이 있고 건강 보험료가 해당 부모의 기본 의무 양육비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DCS는 해당 아동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라고 각 부모에게 요구하는 규정들을 본인의 명령서에 포함시켜줄 것을 ALJ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DCS는 해당 자녀들이 인디언 건강서비스(IHS)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DCS는 어떤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제공 의무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 의무가 있는 부모는 최종 아동 양육비 명령서가 입력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DCS와 비양육권 부모에게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 의무가 있는 부모가 건강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육 의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아래에 나온 순서대로 수행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 a. 양육 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기본 아동양육비의 2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양육 의무 부모는 본인의 고용주나 노조를 통해 자녀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유지해야 함.
  - b. 양육비 명령서에 이름이 나와 있는 자녀들의 건강보험을 위해 다른 부모가 지급하고 있는 월보험료에서 양육 의무 부모인 본인의 몫을 지불해야 함. 비양육 부모의 월보험료는 양육 의무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기본 아동양육비의 25%를 넘지 않아야 함.
3. 본인은 특정한 액수의 아동 양육비를 요청해야 하고, 수정 요청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이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DCS가 본인의 소장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은 DCS에게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a. 완전히 작성한 소장.
  - b. 완전히 작성한 **워싱턴주 아동양육비** 내역서(**Washington State Child Support Schedule**)
  - c. **본인이 아동의 부모가 아닐 경우**, 소득 증빙서류(급여 명세서, 소득 신고서 등).
5. 본인은 위의 서류들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본인의 소송건을 다루는 DCS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전달해야 합니다.

DIVISION OF CHILD SUPPORT  
PO BOX 11520  
TACOMA WA 98411-5520
6. 본인이 위의 서류들을 DCS에 제출하지 않으면, ALJ가 본인의 소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7. 본인은 주소 변동 시 해당 내용을 DCS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본인은 본인 자녀들의 건강 보험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DCS에게 알려야 합니다.
9. DCS는 이 소송건에서 본인을 대리하거나 본인의 아동 양육비 명령서에 관련된 상대방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10. 본인이 예정된 심의회에 불출석 및 불참할 경우 ALJ가 본인의 소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11. 본인의 명령서에 관련된 상대방이 예정된 심의회에 불출석 및 불참한다면, ALJ가 다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a. 추후 공지 없이 DCS 측 또는 출석한 소송 당사자 측 요청을 받아들여줄 수도 있습니다.
  - b. 이 소장에서 제안한 아동양육비 금액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금액을 아동양육비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